



제 417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언론의 사회적 책임 추가 등〉

■ 이정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1890호)

2024. 8.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원모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언론의 사회적 책임 추가	3
2. 정정보도등 청구사실에 관한 알림표시 의무 확대	5
※ 참고자료	
1. 언론중재위원회 및 관련 협회 등 의견	9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이정현의원 등 22인

나. 발 의 일 : 2024. 7. 17.

다. 회 부 일 : 2024. 7. 1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언론은 우리 사회의 원활한 민주적 의사소통을 위하여 공정성, 객관성, 그리고 진실성을 바탕으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개인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 및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책임도 가지고 있음. 이러한 언론의 사회적 책임 원칙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동시에 그 자유가 남용되지 않도록 하는 장치로 작용하고 있음.

그러나 현실에서는 상업적 이익을 우선시한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보도로 개인의 권리가 침해되거나 잘못된 정보의 전달로 사회적 혼란이 야기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데, 언론이 본질적 역할을 수행하고 개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는 언론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최근 인터넷 신문사가 급증하면서 인터넷 신문사가 정확한 사실에 대한 확인 없이 작성한 언론보도로 인해 명예나 권리를 침해당한 피해자들이 급증하면서 2023년 언론중재위원회에 접수된 조정신청

건수는 4,085건에 달했으며, 이 가운데 인터넷신문이 보도한 기사에 대한 정정보도 청구 등 조정신청 건수는 2020년 53.6%, 2021년 57.9%, 2022년 58.5%로 증가하더니 2023년에는 61%인 2,491건으로 최근 4년간 계속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조정신청을 받은 인터넷 매체 기준 열람 차단으로 피해 구제된 건수는 2023년 471건에 불과했음.

한편 언론중재위원회는 2023년 전체 1,158건에 대해 시정 권고를 결정하였고, 이 중 인터넷신문은 87%인 1,007건으로 드러나 인터넷신문으로 인한 법익 침해가 심각함을 보여주고 있음.

이에 언론의 취재 및 보도가 국민의 기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고 법과 윤리가 준수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규정하고, 정정보도 청구등이 있음을 통보받은 경우에 기사제공언론사는 정정보도청구등을 받은 사실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게재함으로써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언론보도로 인한 명예훼손 등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명예나 법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및 제17조의2제2항 후단 신설).

Ⅲ. 검토의견

1. 언론의 사회적 책임 추가(안 제4조)

가. 개정안의 요지

개정안은 언론의 사회적 책임으로 언론의 취재 및 보도는 국민의 기본권을 존중·보호하고, 법과 윤리를 준수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4조(언론의 사회적 책임 등) ① (생략) <u><신설></u> ②·③ (생략)	제4조(언론의 사회적 책임 등) ① (현행과 같음) <u>② 언론의 취재 및 보도는 국민의 기본권을 존중하고 보호해야 하며, 법과 윤리를 준수하여야 한다.</u> ③·④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나. 검토의견

언론은 여론 형성, 권력 견제와 비리 감시, 국민의 알 권리 충족 등의 기능을 수행하며 국민들의 정치 참여를 가능케 하는 민주주의의 필수 요소로서, 최근 통신매체의 발달로 언론의 영향력이 점차 높아짐에 따라 언론의 공정성, 신뢰성 등 공적 책임이 강조되어 왔음.

이에 현행법은 공정·객관적 보도, 국민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 보호, 인간의 존엄과 가치 존중, 타인의 명예훼손·권리침해 금지, 공익 대변,

민주적 여론형성에 이바지 등을 언론의 사회적 책임으로 규정¹⁾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언론조정사건 신청 건수는 증가하는 추세로, 언론보도로 인한 명예나 권리를 침해 사례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이는 바,

[표 1] 연도별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신청사건 접수 현황

(단위: 건)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3,170	3,230	3,562	3,544	3,924	4,278	3,175	4,085

자료: 언론중재위원회

개정안은 “언론의 취재 및 보도가 국민의 기본권을 존중하고 보호해야 하며, 법과 윤리를 준수해야 한다”는 사회적 책임을 명시함으로써 언론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잘못된 보도로 인한 사생활 침해, 명예 훼손 등으로부터 개인의 권리를 적극 보호하려는 취지라 할 것임.

다만, 개정안은 현행법 제4조제2항 “언론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여야 하고,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권리나 공중도덕 또는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의 내용²⁾과 다소 유사한 측면이 있다고 보이므로, 새로운 항을 신설하는 대신 법 제4조제2항을 개정안의 취지를 반영하여 수정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겠음.

1)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언론의 사회적 책임 등) ① 언론의 보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하고,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보호·신장하여야 한다.

② 언론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여야 하고,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권리나 공중도덕 또는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언론은 공적인 관심사에 대하여 공익을 대변하며, 취재·보도·논평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민주적 여론형성에 이바지함으로써 그 공적 임무를 수행한다.

2) 참고로, 현행법 제4조제2항은 헌법 제21조와 유사하게 규정되어 있음.

「대한민국헌법」 제21조 ④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정정보도등 청구사실에 관한 알림표시 의무 확대(안 제17조의2)

가. 개정안의 요지

개정안은 기사제공언론사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부터 정정보도 청구등이 있음을 통보받은 경우, 기사제공언론사가 정정보도청구등을 받은 사실에 대해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게재하게 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제17조의2(인터넷뉴스서비스에 대한 특칙) ① (생략)	제17조의2(인터넷뉴스서비스에 대한 특칙)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정정보도청구등이 있음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기사제공언론사도 같은 내용의 청구를 받은 것으로 본다. <후단 신설>	② ----- ----- ----- ----- -----, 이 경우 기사제공언론사는 정정보도청구등을 받은 사실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게재하여야 한다.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나. 검토의견

2023년도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신청 건수를 살펴보면, 전체 4,085건 중 인터넷신문사업자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당사자인 신청 수는 2,989건(73.1%)으로, 디지털 환경에 따른 매체이용률의 증가와 빠른 전파력으로 인해 다른 매체에 비해 조정 신청 수가 많은 편임.

[표 2] 2023년도 언론중재위원회 매체유형별 조정신청 현황

(단위: 건)

총 건수	신문		방송	잡지	뉴스통신	인터넷		기타
	일간신문	주간신문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	
4,085 (100.0%)	388 (9.5%)	99 (2.4%)	345 (8.4%)	8 (0.2%)	218 (5.3%)	2,491 (60.9%)	498 (12.2%)	38 (0.9%)

이와 같은 언론 매체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현행법은 인터넷 뉴스서비스에 대한 특칙으로서,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³⁾는 정정보도·반론보도·추후보도(이하 “정정보도등”) 등을 청구받은 경우 지체없이 해당기사에 관하여 정정보도등의 청구가 있음을 알리는 표시를 하고, 이를 기사제공 언론사에게 그 청구내용을 통보하도록 하고 있으나⁴⁾, 정정보도등의 청구가 있음을 알리는 표시의무는 인터넷신문사업자에게는 적용하지 않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정정보도등의 청구 사실에 관한 표시의무를 인터넷신문사업자에게도 확대 적용하여 일반인들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하

3)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언론의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전자간행물을 경영하는 자”(법 제2조제18호 및 제19호)로서, 포털사이트 등 인터넷뉴스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함.

4)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인터넷뉴스서비스에 대한 특칙) ①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정정보도 청구, 제16조제1항에 따른 반론보도 청구 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추후보도 청구(이하 “정정보도청구등”이라 한다)를 받은 경우 지체없이 해당 기사에 관하여 정정보도청구등이 있음을 알리는 표시를 하고 해당 기사를 제공한 언론사등(이하 “기사제공언론사”라 한다)에 그 청구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정보도청구등이 있음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기사제공언론사도 같은 내용의 청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기사제공언론사가 제15조제2항(제16조제3항 및 제17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청구에 대하여 그 청구의 수용 여부를 청구인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사를 매개한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려는 것으로, 이용자의 주의 환기로 온라인상 급속한 피해 확산을 방지하여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 할 것임.

다만, 개정안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정정보도등에 관한 청구를 받은 후 이를 인터넷신문사업자에게 통보한 경우에 인터넷신문사업자가 그 청구 사실을 게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다음의 사항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음.

우선, 알림표시 방식을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는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와 다르게 인터넷신문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으로 게재⁵⁾하도록 하고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인터넷신문사업자에게 차별적인 규제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와 동일한 알림표시 방식으로 규율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다음, 대부분의 정정보도등의 청구는 실제 보도를 작성·간행하는 언론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바⁶⁾, 개정안은 인터넷신문사업자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부터 청구사실을 통보받은 경우만 규율하고 있으므로, 인터넷신문사업자가 직접 정정보도등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규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5) 한편, 현행법 상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청구가 있음을 알리는 “표시”를 하도록 하는 데 비해, 개정안은 인터넷신문사업자가 청구 등을 받은 사실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게재”를 하게 하고 있어 용어의 차이가 있음. 개정안의 “게재” 취지가 현행법 상 “표시”와 동일한 경우에는 그 용어도 동일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6) 언론중재위원회 조정건수 제출 자료에 따르면, 2023년도 언론조정 청구건 4,085건 중 인터넷뉴스서비스를 상대로 청구된 건은 498건(13.4%)이며, 이를 제외한 대부분의 3,549건은 (인터넷)신문사, 방송사, 뉴스통신사 등 언론사를 상대로 청구되었음.

다음, 정정보도등의 청구사실 게재에 관한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제재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과태료 등 처벌규정을 두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⁷⁾.

한편, 신문협회 등은 정정보도등의 내용과 관계 없이 핵심정보가 있는 제목 등에 정정보도등의 청구 표시를 강제할 경우 청구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보도의 공신력을 저하시킬 수 있으며, 무분별한 정정보도청구로 언론의 사회적 역할을 축소시킬 여지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문화체육관광부는 입법취지에는 공감하나, 관련 협회 및 업계의 반대와 언론사의 정정보도등의 수용률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므로, 개정안 심사 시 참고할 필요가 있겠음.

문 의 처
02)6788-5380

7) 개정안과 유사한 취지로서 김영호의원이 대표발의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608, 2024.6.18.)은 정정보도등의 청구사실뿐만 아니라 정정보도등이 있는 경우 제목 또는 내용 상단에 이를 알리도록 하고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개정안 심사 시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 1

언론중재위원회 및 관련 협회 등 의견

○ 협회 의견

협회명 (의견제출일자)	의견 주요내용
언론중재위원회 (2024.7.29.)	• (언론의 사회적 책임 추가)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언론의 본질적 역할 수행을 촉진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 하도록 의무화한 것으로, 바람직한 취지로 이해됨 • (정정보도청구 등에 대한 알림 표시 의무 신설) 청구 알림표시의 경우 청구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보도의 신뢰도가 하락할 수 있다는 언론계의 우려가 예상되는 만큼, 각계의 의견 수렴 및 공감대 형성이 선행될 필요가 있음
한국신문협회 (2024.7.29.)	• (정정보도청구 등에 대한 알림 표시 의무 신설) ▲현행 법령으로도 개정안의 입법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규제수단을 도입하는 것은 헌법이 정한 과잉 금지의 원칙에 위배됨. ▲기사 제목의 내용이나 형식을 강제 하는 것과 다름없어 편집권을 침해할 가능성도 큼. ▲‘정정보도 청구 중’이라는 표시는 기사를 잠재적 가해자 또는 악인으로 낙인 찍을 우려가 있음. ▲정정보도청구등의 신청이 접수됐다는 이유 만으로 해당 기사에 이를 표시할 경우 보도의 공신력을 현저히 저하될 수 있음. ▲비판·의혹보도에 ‘정정보도 청구 중’ 딱지를 붙여 후속 보도를 막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할 우려도 있음.
한국인터넷신문 협회 (2024.7.29.)	• (정정보도청구 등에 대한 알림 표시 의무 신설) 조정절차가 진행 되기 전에 청구사실을 게재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언론의 정당한 문제 제기를 봉쇄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매우 큼. 보도의 진위 여부가 가려지기 전에 낙인을 찍어 언론활동을 위축시키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에 개정안에 반대함.
한국온라인신문 협회 (2024.7.29.)	• (정정보도청구 등에 대한 알림 표시 의무 신설) 무분별한 정정보도 청구를 할 가능성이 높고 언론의 사회적 역할을 축소시킬 여지도 있음. 또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음.